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북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

2023. 상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
2. 피복비 집행 부적정 (통보)	6
3. 인사 및 종합근무평정 운영 미흡 (통보)	8
4. 물품관리 업무 소홀 (주의)	11
5. 등록면허세 환급 업무 부적정 (시정)	13
6. 결산 관련 가계정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5
7. 신용카드 관리 미흡 (시정)	17
8. 상품권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소홀 (주의)	18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의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 계약 추진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및 제7장에서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는 제한입찰 운영요령, 1인¹⁾ 또는 2인 이상²⁾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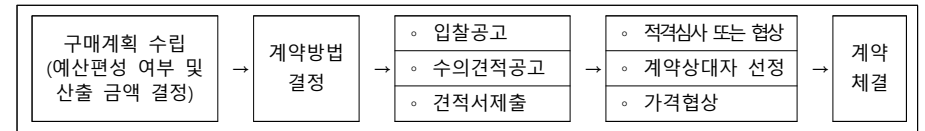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제로

1)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5천만 원 이하
 2) 추정가격 기준 1)용역물품 1억 원 이하, 전기 등 그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종합공사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후 계약상대자 선정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등은 예산편성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설계서 및 견적서 등 통해 산출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절차]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추정가격 산정을 하지 않은 채 아래 [표1]과 같이 ‘재단 ○○○ ◇◇◇◇ △△계약’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 계약인데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하지 않은 채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수기 견적을 제출받아 가장 낮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수의계약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비고
0000.00.00.	재단 ○○○ ◇◇◇◇ △△계약	□□□□□	00,0000	

2. 시공자격 없는 자와의 비교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³⁾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⁴⁾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에 정금액⁵⁾이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전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여러개의 전문업종이 단순히 복합된 공사를 말함
 5) 공사에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부가가치세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단 「복지규정」 제13조에 따라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단 「복지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피복비를 피복 사용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제복착용이 불가피하고 통일된 복장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피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피복을 구매·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등은 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출한 후 1천5백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 공사’ 계약은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⁶⁾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데도 가장 낮은 견적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주)○○○○△△△를 제외한 □□(□□) 및 □□□□⁷⁾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어 견적비교의 의미가 없었다.

[표2] 수의계약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비고
0000.00.00.	○○○○ ◀◀◀ 공사계약	(주)○○○○○○○○	00,000	

그 결과 위 “1”, “2”를 종합해 보면 공사 및 물품임차 계약이 정확한 추정가격이 산출되지 않은 채 수기 견적 비교 및 시공사격이 없는 자와의 견적 비교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등 계약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주의)**
- ② ●●●●● ○○○○과 ◇◇◇ □□□은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사에정금액 1천 5백만 원 이상 실내건축 또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종
 7) 견적서를 제출받은 업체

[표] 피복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입일	지급인원	구입금액	비고
0000. 00. 00.	00	00,000	
0000. 00. 00.	00	00,000	
0000. 00. 00.	00	00,000	
0000. 00. 00.	00	00,000	

그 결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규정을 운영하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피복을 구입해 오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맞게 피복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단 「복지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인사 및 종합근무평정 운영 미흡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단 「인사규정」, 「종합근무평정규정」, 「직원상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승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1. 인사예고제 운영 미흡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인사요인(결원), 인사발령일 등 소속 직원의 승진, 이동 등 주요 인사계획을 포함하여 인사운영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인사예고를 실시하면서 직원 승진과 관련된 인사방향 및 기준, 인사요인(결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인사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인사요인(결원) 등에 따른 승진대상 직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

2. 종합근무평정 이의제도 미운영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국민

권익위원회 의결 2014. 4. 7., 제2014-101호)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흡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기타 인사고충에 대한 창구를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감사 기간 중 위 재단 「종합근무평정규정」을 검토한 결과 근무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평정결과에 이의제기 및 처리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3. 종합근무평정 감점 규정 미흡

재단 「직원상벌규정」 제9조 및 제10조, 제1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직원의 비위 유형,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을 참고하여 징계 대상과 양정기준을 정하고, 중징계⁸⁾ 및 경징계⁹⁾로 구분하여 직원의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문책조치 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훈계와 주의로 구분하고, 처분 횟수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재단에서는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라 매년 직원의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하여 승진, 성과급 운영 등 각종 인사관리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¹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위 재단의 「종합근무평정규정」을 확인한 결과 내·외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강등, 주의 또는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문책 의미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직원 승진과 관련된 인사방향 및 기준, 인사요인(결원) 등을 포함한 인사예고제 운영, 종합근무평정 결과에 이의제기 및 처리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외부감사 결과 강등, 주의 또는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규정 등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8) 파면, 해임, 강등, 정직

9) 감봉, 견책

10) 정직 2.5점, 감봉 2.0~1.5점, 견책 1.0점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단 「자산관리요령」에 따라 자산의 취득, 사용, 보관, 처분,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물품수급계획 미수립 부적정

같은 요령 제63조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매년 예산이 성립되면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수급하여야 할 중요품목에 대한 수급계획을 업무기능, 업무량 정원 등을 참작하여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의 구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수급계획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매년 직원 수 및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수급계획에 따라 물품 구입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지도 아니한 채 0000. 00. 00. 업무용컴퓨터 및 모니터 00대를 구입하는 등 물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재물조사 업무 처리 미흡

재단 「자산관리요령」 제67조에 따르면 ◎◎부장은 매년 6월 30일 현재의 자산에 대하여 장부와 대장 및 실물을 대사하는 방법 등으로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방법은 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요령 제68조에 따르면 재물조사결과 부족함이 발생할 때에는 관리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매년 재물조사 지침을 수립하여 장부와 실물을 대사하는 등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매년 재물조사 지침을 수립하지도 아니한 채 재물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감사대상 기간 동안 재물조사 결과 실물불일치, 자산의 훼손·망실이 한차례도 발견되지 않는 등 재물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물품 구입 및 처분 등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재물조사지침을 수립하여 재물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등록면허세 환급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와 관련하여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21조에 따르면 등록세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등록세 관할 관청 세무과에 등록세 등의 환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법원 가압류가 기각되는 사유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환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00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000,000원을 환급받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급되어야 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환급받지 않고 있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000,000원을 환급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결산 관련 가계정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결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재단 「회계기준」 제31조,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르면 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리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기업회계원칙 등을 준수하여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11조에 따르면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미결산계정은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 「계리요령」 제35조에 따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단기일 내에 정리 또는 회수하거나 정당과목으로 대체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가수금, 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 잔액은 건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단기일 내에 정리하거나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결산시에 전액 정당계정으로 대체하거나 회수하는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결산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수금, 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을 정당계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결산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가수금, 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 미정리 내역

(단위 : 원)

회계연도	가지급금	가수금
0000	-	00,000,000
0000	-	00,000,000
0000	-	00,000,000
0000	00,000	00,000,000

그 결과 미결산 계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하고 결산되어 재무건전성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결산 전 가수금 및 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계정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관리 미흡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등 발급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기관은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00장에 대해 발급일자, 금융기관, 보관책임자를 알 수 있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해당 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0000년 발생한 ◎◎은행 기업포인트 000,000점을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용 중인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시고, 0000년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 000,000점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상품권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소홀
 소 관 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상품권 사용내역 미공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재단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재단 「상품권 관리기준」 제13조(사용내역 공개)에 의하면 상품권의 구매목적,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상품권 구매·사용 후 사용내역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0000년 00월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상품권 관리기준」에 의한 상품권 구매·사용내역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수의계약 내역 공개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1. 공통사항의 공개내역서 서식에 따라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를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 수의계약 사유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공개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